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(안)

의안 번호 80

발의년월일: 2007. 6. 28.

발 의 자:김기중의원외4인

1. 제안이유

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(안)과 2007년도 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.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 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.
- 위원회 정수는 9인으로 구성

3. 참고사항

○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